

2021년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5. 17.(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0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42건(안전번호 제2021-50959호~5216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50959호~50988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50989호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하여 토렌트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사안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50990호는 심의일 현재 게시자에 의하여 이미 삭제된 건이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일부를 게시하여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판단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0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593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4103호~469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의 총 593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6쪽과 10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저작물명, 12쪽 긴급대응 저작물명 및 저작물 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64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50959호~5216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0959호~50978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4건임.

안건번호 제2021-50959호는 '☆☆☆☆☆☆☆☆☆☆☆☆☆☆☆☆☆☆☆☆☆☆☆☆☆☆☆☆☆☆☆☆'를 3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건임. 채증자료 우측 하단에 불법사이트 워터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후 재업로드 한 불법복제물 파일로 보임.

안건번호 제2021-50978호는 '★★★★★★★★' 채증자료 우측 상단에 정식 한국어판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음. 정발본을 스캔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0979호~50988호는 실명의 민원인들이 각각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에 외국 애니메이션을 게시한 사안 총 11건임.

이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50959호~509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모두 데드카피 안건으로 확인되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음. 이견 없음.
- C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E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50959호~50988호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098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 이용자가 블로그에 “●●●●●●●●●●●●●●●●”라는 제목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의 한 화 전체 분량의 다운로드 정보를 제공하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토렌트 파일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다운로드 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은 2020. 1. 6.부터 2020. 3. 23.까지 일본 AT-X와 우리나라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하였음. 현재 국내 OTT 서비스인 왓챠를 통하여 스트리밍 이용할 수 있고,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회당 800캐시에 다운로드 이용할 수 있음.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의 이름, 크기, 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저작물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함. 토렌트 파일 자체에 저작물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유파일의 시더와 피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시더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는 경우 등에는 다운로드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토렌트 파일의 제공만으로 저작물 파일, 즉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하지만 복제권 침해의 방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취보면 게시자는 이용자들이 해당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복제된 저작영상물의 원본을 전송받아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렇다면 토렌트 파일을 전송한 해당 안건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5098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E 위원: 토렌트 파일을 통해 공유파일의 시더와 피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시더와 피어가 어떤 의미인지?
- B 위원: 토렌트는 불법복제물을 특정한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님. 불법복제물의 조각조각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임. 불법복제물을 일대다로 공유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파일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형태임. 이때 시더는 본인이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파일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고 토렌트 파일은 시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 파일임.
- A 위원: 이런 형태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 B 위원: P2P 서비스의 경우 한 명의 상대에게 파일을 받는 형태여서 상대방이 공유를 끊어버리면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토렌트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낮고 다운로드 속도 또한 빠름.
- D 위원: 일대다 공유 방식인데, 그러면 대가는 누구에게 지불하게

상품이 제공되는 형태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로 촬영으로 보이는 점, 해당 영상 우측 하단부에 보이는 워터마크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편집, 공유할 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인 점, 화면이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영상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저작물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화한 일명 '도촬 영상'인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법은 제104조의6, 제137조 제1항 제3호의3에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권 침해 일반규정과 별도로 규정된 것이며, 은밀히 이루어지는 도촬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해당 게시물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게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심의일 오전 확인한 결과 현재는 삭제된 상태임.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보임.

(2021. 5. 14. 채증한 해당 게시물 하단의 댓글을 제시하면서)블로그 이용자들이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지적하며 삭제를 요청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안건이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5099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우에는 부결해왔었으나, 본 사안의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 의견으로 검토되었음.
- D 위원: 기존에 시정권고를 하지 않았던 건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지?
- B 위원: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상을 도촬하였고, 전체 분량의 영상물 제공에 대한 금전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안건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저작권법 위반 상황이 심각해 보임. 경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함.
- D 위원: 게시자가 금전적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 알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D 위원: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불법복제물 게시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면 기존 심의위원회가 정한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강나래 전문위원: 기존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정이 있다면 한정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정권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임.

하지만 해당 심의 안건은 저작권법에서 개별 규정으로 정하여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음.

(해당 블로그 게시물 전체목록을 제시하면서)해당 블로그 게시물 전체 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이미 보호원에 의해 시정권고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저작권자 요청으로 게시물의 전송이 중단이 된 건도 있었음.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용자로 확인이 됨. 또한 '도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영상 및 사진을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제4분과위원회(제2021-79회 2021. 4. 15. 개최)는 심의 시점에 저작권법 침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판단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 C 위원: 해당 게시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D 위원: 같은 생각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여 이용자에게 저작권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A 위원: 도촬 영상이 현재는 삭제되어 있으나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인 점 및 게시자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고의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E 위원: 위법행위의 표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으나 자진 삭제하였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가 타당하다는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50990호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0991호~5216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롤린 (Rollin’)’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0992호는 2021. 5. 8.자 음원 순위 차트에 오른 100여 곡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8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영화 ‘보이저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167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86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은 2021. 5. 26. 우리나라에서 개봉 예정인 작품임.
(방송 ‘드라마 스테이지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드라마 스테이지 2021’은 2021. 3. 3. ~ 2021. 4. 21. tvN에서 방영한 10부작 드라마임. 안건번호 제2021-52083호는 해당 드라마 2021. 4. 21. 방영분인 에피소드 10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8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이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50991호~5216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0991호~5216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0959호~52160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7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103호~4695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2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